

## (758)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 
우미경 위원입니다.

선배·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위원이 박준희 위원과 공동 발의한 『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그럼 『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
사유지이지만 일반시민들의 공공공간으로 조성되어지는 공개공지의 활용도 증진을 위해, 공개공지의 전문가 점검 및 리모델링시 일부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공개공지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.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본 위원과 박준희 위원이 공동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